

위원회설치 규정

제정 2016년 04월 08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의 중요사항을 예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내에서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. 다만, 법인의 정관 및 학칙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.

제3조(설치)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
제5조(임기) ①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②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소집과 의결)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총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.

③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관계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회의록)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1/2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)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11조(해산) ①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기한부로 설치된 위원회가 활동연장에 관한 결재 요청이 없는 때에는 기한 도래시

해산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